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 입니다.
- ·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했다고 <mark>서명</mark>을 하거나 <mark>녹취기록</mark>을 남기면, 추후 해당 내용에 관한 권리 규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무)흥국생명 온라인정기보험















※ 상기 아이콘 특성정보는 상품특성을 도식화하기 위해 변동가능한 가정이 사용되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본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님을 위한 상품설명서

-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mark>반드시 숙지</mark>하시기 바랍니다 -

□ 유사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이 보험상품은 **정기보험**으로, 종신보험 가입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상품은 가입 후 **일정기간 동안만** 사망을 보장하는 **정기보험**으로, 가입 후 평생 동안 피보험자 의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과는 다릅니다.

구분	종신보험	정기보험
보장기간	평생(사망할 때까지)	일정기간 (~80세 등)
보험료	상대적으로 비쌈	상대적으로 저렴



(무)흥국생명 온라인정기보험 상품설명서

(온라인보험용)

□ 민원·분쟁·상담이 많은 사항

타인의 생명보험 가입에 관하 사항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종신보험 또는 정기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반드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무효처리되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에 관한 사항

과거 질병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과거 질병의 진단 및 치료사실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 외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경우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향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 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중도해지 시 유의사항] 중도 해지 시 돌려받는 금액이 지금까지 낸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계약을 중도 해지 시(예: 120개월 간 보험료 4,392만원 납입) 위험보험료, 사업비* 등을 빼고 남은 금액을 적립한 금액(예: 2,192만원)을 돌려드려 지금까지 낸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 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 위 예시액은 **가상상품** 및 **가상고객**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며, 실제 경과기간별 납입보험료 및 해 지환급금 예시는 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보험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예금자보호법 적용] 해지환급금 등 기타 지급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 (1인당 최고 5천만원)

○ 납입하신 **보험료 전액**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서]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예금자보호제도

[보험료 감액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보험료 감액은 경제사정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용하세요.

- 보험료를 감액하더라도 사업비*는 보험료가 감액된 비율만큼 줄지 않아, 최초 가입 시 안내받은 만기(해지) 환급률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 해당 보험 계약의 체결 및 관리에 드는 비용 등

 - ※ 보험료 감액을 이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보험회사 등에 불이익 사항 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재해사고에서 보장이 제외되는 사항] 재해보험금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등 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사고에 대하여만 지급됩니다.

○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해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경우 에는 재해 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약관] 별지 "재해분류표"

[보험료 변동 관련 유의사항] 이 상품에는 **갱신형 담보**가 있으며, **갱신 시 보험료가 변동(인상)**될 수 있습니다.

- 담보명에 '(갱신형)'이 포함된 보장 계약은 갱신할 때마다 연령의 증가, 위험률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 ※ 갱신형 담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 본문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보험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갱신형상품(특약)에 관한 사항(만기시 갱신 조건)

□ 민원·상담·분쟁조정 연락처

구분	보험회사		외부기관				
사다.미인	전화상담	새며니처청히	콜센터	02-2262-6565			
상담·민원	전화상담 (1588-2288)	생명보험협회	인터넷 상담	https://consumer.insure.or.kr/ counselCase/qna/list.do			
		그ᄋ가ᄃ이	콜센터	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누리집 (www.heungkuklife. co.kr)	금융감독원	e-금융 민원센터	https://www.fcsc.kr/	■ 2		
		한국소비자원	콜센터	국번없이 1372			

1. 보험계약의 개요

□ 보험회사 : 흥국생명보험(주)

□ 모집자 : 흥국생명 온라인보험 (연락처 : 1877-5812)

□ 주계약 보험기간 : 10년만기

□ 보험상품명 : 무배당 흥국생명 온라인정기보험 2종,2형-최초,우량체

□ 보험계약관계자 : ■ 보험계약자 김지현 님 ■ 피보험자 김지현 님





⊙ 보험가입조건

고객님의 상령일은 2022년 07월 17일입니다.

피보험자	피보험자 김지현 (24세,여)		2종(갱신형)_2형(보장추가형) 우량체(비흡연체)
보험기간	10년만기	납입주기	월납

⊙ 주계약 · 특약보험료

	상품명	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료
주계약	무배당 흥국생명 온라인정기보험	10,000 만원	10년만기	전기납	3,000원
				합계보험료	3,000원

	할인후 보험료	3,000 원		
건강체 할인	할인효과	월 0.0원(0.0%)		
	총 할인금액	0 원		

- ※ 주보험은 10년단위갱신형 상품입니다.
- ※ 갱신후 보험기간은 80세까지 가입(갱신)이 가능합니다.
- ※ 주보험을 계속 갱신할 경우 주보험의 최대 갱신가능기간(80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 ※ 다만, 80세만기의 경우 최종 갱신계약의 만기나이가 80세를 초과할 경우 최종 갱신계약에 한하여 운용합니다.
- ※ 특약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갱신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특약의 가입내역은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자의 권리

가.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 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계약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청약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회사에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 청약서에 안내드린 방법으로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관련 서면 등을 발송하신 후 아래 연락처로 확인전화를 주시면 더욱 신속하게 철회 절차를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신청 주소: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226번지 흥국생명빌딩언더라이팅팀 (전화: 1588-2288)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나.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계약자가 회사의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초과된 계약 및 보험기간이 종료된 계약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계약자는 「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도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위법계약해지권) 제1항에 따른 해지요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자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해지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1.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2.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3.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라,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보장범위 및 가입금액 변경으로 인한 감액 청구

보험계약을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회사의 신청기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하고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 감액 청구

상법 제 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에 따라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cdot 보험계약 당시 B형 간염에 걸려 할증된 보험료로 보험계약을 한 이후 B형 간염의 항체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으면 치료 후 낸 보험료에서 할증된 금액만큼 환급이 가능
 - (단, 질병으로 인한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

3. 피보험자의 권리

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권리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한(서명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되며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4. 보험계약자의 의무

가. 보험계약전 알릴 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 고지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mark>중요한 사항</mark>*에 대하여 <mark>사실대로 기재</mark>하고 <mark>자필서명 (전자서명 포함)</mark>을 하셔야 합니다.

*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mark>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타사 보험계약 가입여부 등</mark>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고지의무 위반 효과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보험료 납입의무, 납입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및 부활 (효력회복)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 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 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 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 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5. 보험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가. 계약의 해지·해제·무효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사항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제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대사유에 의한 해지)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

-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의 해제사항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 계약의 무효사항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②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③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 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 2항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 □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25%입니다.
- □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하고, 적용기초율(적용위험률, 적용사업비율, 적용이율)은 **갱신 시점의 적용기초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연령증가에 따라 최초계약 당시보다 <mark>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mark>.

다.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등

□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해지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예시표

[단위: 원, %]

경과기간	도달나이	납입보험료누계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24	9,000	0	0.0
6개월	24	18,000	0	0.0
9개월	24	27,000	0	0.0





1년	25	36,000	0	0.0
2년	26	72,000	0	0.0
3년	27	108,000	1,446	1.3
4년	28	144,000	6,084	4.2
5년	29	180,000	10,723	5.9
6년	30	216,000	12,361	5.7
7년	31	252,000	15,000	5.9
8년	32	288,000	11,000	3.8
9년	33	324,000	7,000	2.1
10년	34	360,000	0	0.0

[※] 이 보험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유지비용 (해지공제액 포함)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라.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 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사망보험금,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장해보험금, 입원보험금 등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실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에도 수익자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중도보험금 및 만기환급금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기타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 □ 보험수익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때에는 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 □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상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순위로 보험수익자를 정합니다.
- ▶ 민법상 법정상속인 순위: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의 방계 혈족
 - * 배우자는 위의 1,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 □ 보험수익자 지정 방법 안내
- * 보험수익자 지정, 변경 등에 필요한 구비서류 : 계약자, (종)피보험자, 변경후 수익자 각각 신분증, 피보험자와 변경후 수익자와의 관계서류 등
 - * 타인으로 변경 시 피보험자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계약변경동의서(인감날인)
 - *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모집자나 콜센터(1588-2286)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heungkuklife.co.kr)을 통해 문의 가능

마.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보험료납입면제

피보험자가 50%이상 장해 시 (다만,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 전 보험료 납입면제사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약관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최초계약의 해지환급금만 포함된 금액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만기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



바. 보험가격지수

⊙ 보험가격 지수

사프데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가격지수(%)		
상품명	포함기선		여자	가입금액(만원)	
(무)흥국생명온라인정기보험(2종,2형-최초,우량체)	10년	10년납	76.7	10,000	

[※] 보험가격지수란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사. 갱신형 상품(2종 갱신형)에 관한 사항(만기시 갱신 조건)

- □ 갱신형 상품(2종 갱신형)은 10년 단위로 갱신되며, 갱신시마다 보험나이 증가, 적용기초율(적용이율, 적용사업비 및 적용 위험률) 변경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 갱신형상품(2종 갱신형)은 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갱신됩니다

■ 갱신보험료 예시

구분	10년후	20년후	30년후	40년후	50년후
갱신나이	34 세	44 세	54 세	64 세	74 세
주보험	5,000 원	8,000 원	17,000 원	52,000 원	175,000 원

[※] 상기 갱신보험료는 가입당시의보험요율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므로, 연령 증가 및 보험요율의 변경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는 상기 예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할 사항

● 주계약 보장내용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スゖね	재해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		20,000만원
주보험	일반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	10,000만원

[※] 상기 보험가격지수는 대표계약(40세, 월납기준)을 기준으로 예시한 것으로 실제 계약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가 갱신됨에 따라 고령시점에 부담하는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유의사항은 보험계약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지급에 관한 약관내용의 일부를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제9차 개정 이후 이 상품의 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으로 분류되는 질병 및 재해는 <mark>진단된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기준을 적용</mark>합니다. 또한, 진단 이후에 진단시점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가 개정되어 해당 분류 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추가로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시1)

청약시점: 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적용 ☞ 보장 대상

진단시점 : 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적용 ☞ 보장 제외(변경) → **진단시점 기준(보장 제외) 적용**

예시2)

진단시점: 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적용 ☞ 보장 제외

개정 후 : 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적용 ☞ 보장 대상(변경) → 변경내용 소급적용 불가

□ 재해로 인한 장해가 아닌 퇴행성 장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재해로	. 인하여 두	-가지 이성	! 장해가 싱	생긴 때에	는 각각에	ㅣ해당하는	: 장해지 [.]	급률을 [더하여 최	종 장해지	급률을	결정하며,
동일한	신체부	위에 두가	지 이상의	장해가 발	생한 경우	위그중	E은 장해?	지급률을	적용합니	니다. 다민	t, 장해분	류표의 :	각 신체
부위별	판정기	군에서 별	도로 정하	는 경우에는	는 그 기침	준을 따릅	니다.						

□ 정당하 이유없이 치료를	를 게읔리하거나 부헌수익자가	·치료록 해주지 않아 장하	H가 심해진 경우에는 보험금O	Ⅰ 삭간됙 수 있습니다
	할 때 골의 학자의 속 급기 기대자	기프를 헤나가 많이 당하	1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I 762 M677.

- □ 치료가 종료된 후 영구히 고정된 증상이 아닌 5년이상 한시적 장해에 대하여는 해당 장해지급율의 20%를 지급합니다.
- □ 피보험자의 나이는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 피보험자의 나이에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 다만,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그러나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무효로 하지않습니다.
-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하며, 한시 장해일 경우에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장해 지급율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합니다.





가. 보험금 청구·지급절차

① 보험금 청구	② 현장확인 여부 심사	③ 손해사정/사고조사 (필요시)	④ 보험금 청구 진행결과 안내	⑤ 보험금 지급여부 심사	⑥ 보험금 지급
----------	-----------------	----------------------	---------------------	------------------	----------

- ① 보험금 청구 : 보험 계약내용 확인/구비서류 확인 후 팩스, 인터넷, 고객센터 등으로 접수, 보험사는 접수번호, 담당자명 등을 SMS로 통지
 - ※ 콜센터 등을 통해 보험 계약내용 확인/구비서류 확인
- ② 현장확인 여부 심사 : 심사 및 조사 여부 검토
- ③ 손해사정/사고조사 : 보험금 또는 손해액을 산정
- ④ 보험금 청구 진행결과 안내 : 고객이 선택한 방법(서면, SMS, 이메일 등) 접수번호, 청구 사유 및 사고 내역 등의 정보 안내
- ⑤ 보험금 지급여부 심사 : 청구 서류 및 조사내용 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 검토
- ⑥ 보험금 지급 : 지급 내역 안내 및 보험금 지급

나. 기타 금융소비자가 보험금 청구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 손해사정사의 선임 관련 고객의 권리사항 안내
 - 사고의 손해사정을 위해 별도로 손해사정사의 선임이 가능하며, 선임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 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 손해사정법인: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해 인가받은 업체

〈손해사정사 선임 시 비용주체〉

- 보험계약자 등 부담
-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 보험회사 부담
-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 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합니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 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 가입자가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의료심사

보험수익자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판정에 드는 비용은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 보험금 지급 예정일은 통상 3영업일 이내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10영업일 이내 소요됨을 알려 드리며 지급기일(조사 시 10일)내 미지급시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해당보험의 이자계산법에 의한 소정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드립니다.
-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가지급제도 신청은 당사 콜센터 (☎1588-2288)로 가능합니다.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요 사례 안내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례

A씨는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OO질병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일 다음 달부터 약1년간 당뇨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 유의(참고)사항: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사가 청약에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계약전알릴의무),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할 수 있음

(보험가입자가 청약서의 질문표에 답변을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을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사례

상해보험을 가입한 A씨는 운동 중 무릎을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보험가입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보험 사고일로부터 3년이 한참 지난 후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떠올라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 유의(참고)사항: 보험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그 기간을 경과하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타인의 생명보험 가입관련 사례

A씨는 B씨의 자필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OO보험을 가입하였고, 이후 B씨가 사망해 A씨는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계약 무효처리 및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 유의(참고)사항: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에 동의를

- 암보장 보장시기 관련 사례

A씨는 암보험에 가입한 후, 2 달이 지나 위암을 판정받아 보험회사에 암진단비를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 유의(참고)사항: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에 동의를 얻어야함, 그렇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됨



5.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가. 예금자 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 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나. 상품별 주요 민원사항

□ 민원사례1

유형	납입면제 관련
내용	40세 여자인 A고객은 건강, 가족력 등의 걱정으로 보험상품을 알아보던 중 OO정기보험을 가입하게 됨 가입당시 설계사B씨로부터 암진단시에는 무조건 납입이 면제되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도 보장을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을 들음 A고객은 청약서에 서명 이후 보험료는 자동이체로 납입되었으며 약관, 증권, 상품설명서 등의 서류를 정상적으로 전달받음 몇 달 뒤, 우연히 약관을 읽어보던 중 암진단시에 납입이 면제된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어 콜센터에 문의하게 됨. 납입면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다시 확인한 A고객은 가입 당시 설계사의 부실설명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함
유의 사항	납입면제에 대한 사항은 상품별로 상이하므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 후 가입하여야 함

□ 민원사례2

유형	보장내용 상이 관련
	최근 중년기에 접어든 C고객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에 정기보험에 관심을 갖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모집인 B씨에게 00정기보험 가입을 권유받음
	C고객은 00정기보험이 납입완료 시점에 이르면 해지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찾을 수 있는 원금보장 상품이라 설명 들었음
내용	C고객은 청약서 서명이후 상품설명서 및 증권, 약관 등 중요 서류를 모두 수령하였으나 모집인 B씨의 설명만을 믿고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으며, 가입 이후 자동이체를 통하여 보험료를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함
	이후 수개월이 흘러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 C고객은 콜센터를 통해 환급률을 확인하게 됨.
	환급률이 기대 이하로 저조할 뿐만 아니라 계속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납입완료 시점의 환급률이 100%가 되지 않음을 안내 받음
유의	정기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의 계약은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사항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을 원하는 경우 보험회사 및 외부기관(생명보험협회,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 콜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중지 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보험계약의 전화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새로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 수 있고,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해지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전환시에는 충분한 전환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나.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지)환급금보다 현저히 적어질 수 있습니다.

라. 보험사기에 관한 사항

보험사기(고의사고, 허위사고, 피해과장, 사고 후 보험가입 등)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형법」상 금지된 범죄이며, 형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사실을 당사 '보험사고특별조사파트' 로 제보하여 주시면 포상기준에 따라 포상합니다.

마.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에 관한 사항

1. 보험금 대리청구인 제도란?

보험사고(예: 치매 등) 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대리청구인)를 보험가입초기 또는 유지 중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금 대리청구인은 왜 지정해야 하나요?

보험계약은 질병(치매 등)이나 상해 등의 보험사고 발생시 가입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특징으로 인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 발생시 인식불명 등으로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시: 계약자가 자신을 위한 치매보험 가입 후 치매가 발생한 경우

- ·····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어 치매보험금 청구가 곤란
- ☞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여 두시면 대리청구인이 가입자(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문의

가입하신 계약 중 본인을 위한 계약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경우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콜센터 연락처 : 1588 - 2288



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관한 사항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의 보험, 예금, 대출 등 금융거래계좌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수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자 금융감독원(금감원 통합콜센터 1332)에서 조회를 원하는 상속인 등에게 금융계좌 보유 유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구비서류: 사망사실(사망일자 포함)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원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보험자가 법원으로부터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선고 받은 경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법원판결문(원본), 등기사항 증명서(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 확인)

사. 보험가입내역 조회서비스에 관한 사항

보험가입자가 본인의 보험가입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보험수익자 또는 유족(이하 "보험가입자 등")이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 등은 보험가입내역을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 회를 통해 조회 하실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조회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아. 비흡연체할인 서비스 가입에 관한 사항

20세 이상으로 회사가 정하는 진단기준 및 비흡연 건강체에 부합되는 피보험자(이하 "우량체"라 함)만 가입가능하며, 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해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 비흡연 건강체의 정의 : 직전 1년간 흡연 사실이 없을 것.

■ 표준체·우량체의 보험료 비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료		
포임기합금액			표준체	우량체	
10,000 만원	10년만기	전기납	3,000원	3,000원	



영수증번호: 79004011746773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

번호	주요설명내용
1	보험회사 및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계약의 개요
2	청약철회, 계약취소, 고지·통지의무 및 위반효과, 보험료 감액청구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보험가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사항
3	보험계약별 보험료 및 보장내역 (갱신특약의 보험료 인상 등에 대한 주의 설명 포함)
4	보험금 지급관련 보장하지 않는 사항, 보험금 청구·지급 절차 등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5	계약의 해지·해제·무효, 적용 이율, 해지환급금, 상품별 특이사항 등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6	예금자보호, 주요민원사항,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 등 보험계약자보호에 관한 사항
7	보험계약전환, 소멸시효, 계약변경, 보험사기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유의사항
8	주보험2종(갱신형)에 가입하신 경우 갱신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갱신주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 안내,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에 관한사항,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비흡연체 할인특약의 주요내용에 관한 사항 (일정 요건의 건강상태가 충족되는 경우 보험료가 할인되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입자격, 건강-표준 보험료 비교 및 계약기간 중 중도청약가능함을 설명 받았음)

■ 주요내용 계약자 확인사항

-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에 회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u>자필서명</u>(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 □ 이 계약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u>보장성보험</u> 상품으로 은행의 예금, 적금 등과 **다른 상품**입니다.

□ <u>원금손실의 가능성</u> 있음

이 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 비용, 해지공제금액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u>적거나</u> 없을 수 있습니다.

■ 고객이 확인할 사항

전자청약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질문 사항을 읽고 답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과 상품설명서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동 상품설명서, 변액보험 운용설명서는 이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보험약관을 <mark>참조하셔서 세부 설명자료를 상세히 확인</mark>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확인]

● 보험계약자께서는 2022년06월23일 에 이 상품설명서 내용과 본인이 가입하는 보험계약의 예금자보호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하여 당사 인터넷홈페이지 (www.heungkuklife.co.kr) 상에서읽어보시고 전자서명을 통해 확인하셨습니다.



영수증번호: 79004011746773

〈보험상품의 특성정보 아이콘 설명〉

	구분	아이콘	설명
기 본 특 성 정 보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용상품 1인당 제고 5번만됨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 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보험유형	보장성보험 (사망, 상에, 질병 등)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총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입니다.
	적용금리 유형 (확정형)	금리확정형 2.25% 적용금리 고정	보험료적립금의 적용이율이 고정된 보험입니다.
	청약철회기간	청약철회기간 행약위 30일 이내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수 이비지 교전 전 거	보험가격지수	보험가격지수 [보용수록 제정] XX% [보험사평균=100%]	100% 초과이면 업계 평균보다 가격수준이 높고, 100% 미만이면 업계 평균보다 가격수준이 낮습니다.
	해지환급률	해지환급률 3년: XX% 5년: XX% 7년: XX% [납입보험료 기준]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유지비용(해지공제액포함)등 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개増斷성정보	보험료갱신형	보험료갱신형 보험료 변동가능	위험률 변경 등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